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75,912,953	23,277,389
일반회계	701,166,348	21,034,990
특별회계	74,746,605	2,242,398
공기업특별회계	45,913,517	1,377,406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8,808,722	564,262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7,104,795	813,144
기타특별회계	28,833,088	864,99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87,758	29,63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0,418	91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80,222	17,407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869,060	146,072
수질개선 특별회계	5,953,725	178,61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15,317	27,460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15,496,588	464,8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97,19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